

# 2025년도 「개방형실험실 운영사업」 주관기관 모집 공고

병원이 보유한 우수 자원 개방을 통해 창업기업의 기술·제품 고도화 및 병원-기업 간 상생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2025년도 「개방형실험실 운영사업」의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 1

## 공고 개요

2025년도 개방형실험실 운영사업(※민간경상보조사업)		
지원유형	(유형①) 협업 기반 조성형	(유형②) 협업 성과 창출형
선정 규모	2개 기관(병원)	4개 기관(병원)
지원예산 (국고보조금)	450백만원/년(기관당)	650백만원/년(기관당)
주요 내용	■ 병원 자원 개방, 임상 전문인력(임상의 등) 활용 창업기업 컨설팅 등 병원-창업기업 간 협업체계 구축 및 운영	■ 「(유형①) 협업 기반 조성형」 추진 과제 및 병원(임상의)-창업기업 간 공동협력연구, 산-병 교류프로그램 등 운영
지원 기간	■ <u>협약일로부터 2026.12월까지</u> - 계획이행, 성과 달성 및 차년도 계획을 평가하여 계속 지원 결정(최대 2년) ※ 협약체결, 예산 지급 및 집행 등은 연 단위로 추진함	
기타 참고사항	■ <u>국고보조금의 20% 이상 민간부담금 부담</u> - 국고보조금의 20%는 반드시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추가분에 한하여 현금 또는 현물(참여인력 인건비) 부담 가능 ■ <u>지원예산(국고보조금)은 정부 예산(안)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u>	

\* 지원유형별 추진 필수사항 등은 '세부 사업내용' 참조

## 2

## 신청 자격

### □ 신청 자격

- 보건의료분야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우수 역량을 갖춘 병원(의료기관)
  -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한함
- 본 사업을 신청하는 병원(의료기관)은 지원유형 중 하나만 선택 가능
  - \* 「(유형①) 협업 기반 조성형」 또는 「(유형②) 협업 성과 창출형」 중 택 1
- 단, 기존 「개방형실험실 구축사업」 주관기관으로 참여했던 병원은 「(유형②) 협업 성과 창출형」만 신청 가능

### □ 신청 제한

- 신청기관은 보조금법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신청을 제한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3

## 신청 및 접수

- 신청·접수 기간 : 2025. 1. 24.(금) ~ 2025. 2. 28.(금), 17:00까지

##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 \* (제출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육성단 산업육성지원팀 송주영
-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시간('25.2.28.(금), 17:00) 내 도착분에 한하며 반드시 수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우편 방식으로 발송

### ○ (제출서류) 제출공문(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수신) 1부, 사업신청서 및 제안서 10부, 민간부담금 납입확약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 제출서류 파일은 우편 또는 방문 접수 후 이메일(zoooy91@khidi.or.kr)로 별도 송부

##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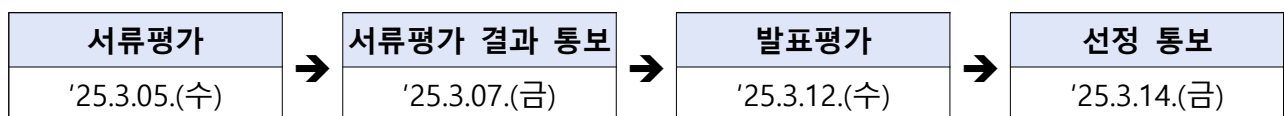
## 평가 및 선정

## □ 평가 방법 및 절차

- 2단계 평가(① 서류→② 발표) 실시, 서류평가 통과기관 대상 발표평가 진행
  - 서류평가: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를 고득점순으로 선발, 발표평가 대상기관으로 선정
  - 발표평가: 기관 보유 인프라 및 사업추진 역량, 창업기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평가는 신청기관당 30분(발표20분, 질의응답10분)\* 내외로 운영되며, 발표는 사업책임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발표자료는 PPT 형식으로 작성, 분량 제한 없음

### <평가 및 결과통보 일정>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발표평가 세부 일정은 대상기관에 별도 안내

- \*\* 이의신청은 선정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 평가지표

### ○ 서류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1. 사업계획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목적 및 지원 방향과의 부합성</li> <li>▶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명확성</li> </ul>	20								
2. 사업수행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기관의 보유 인프라 및 인력 등 역량</li> <li>▶ 전담조직의 전문성 및 역량</li> </ul>	30								
3.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공간 구축 및 인프라 확보 계획의 적절성</li> <li>▶ 임상 전문가 확보 및 활용 계획의 구체성</li> <li>▶ 창업기업 발굴 및 지원 계획의 차별성</li> <li>▶ 지원 프로그램의 차별성 및 독창성</li> </ul>	50								
가점	▶ 민간부담금 (현금+현물) 조성 규모	(최대) 3								
	<table border="1"> <thead> <tr> <th>민간부담비율</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20% 초과~30% 미만</td> <td>1점</td> </tr> <tr> <td>30% 이상~40% 미만</td> <td>2점</td> </tr> <tr> <td>40% 이상</td> <td>3점</td> </tr> </tbody> </table>		민간부담비율	점수	20% 초과~30% 미만	1점	30% 이상~40% 미만	2점	40% 이상	3점
	민간부담비율		점수							
	20% 초과~30% 미만		1점							
30% 이상~40% 미만	2점									
40% 이상	3점									
<b>합 계</b>		<b>103</b>								

### ○ 발표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1. 공간 구축 및 인프라 확보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방형실험실 전용공간 구축 계획의 적정성</li> <li>▶ 신청기관의 인프라(시설 장비 등) 확보 계획의 타당성</li> </ul>	15
2. 임상 전문가 확보 및 활용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상 전문가(임상의 등) 확보 방안</li> <li>▶ 임상 전문가 활용 계획의 구체성</li> </ul>	25
3. 창업기업 발굴 및 지원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기업 발굴 및 모집 방안</li> <li>▶ 창업기업 지원 계획의 구체성 및 차별성</li> </ul>	25
4. 지원 프로그램 운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차별성</li> <li>▶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독창성</li> <li>▶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실행 가능성</li> </ul>	30
5.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5
<b>합 계</b>		<b>100</b>

## □ 최종 선정

-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수행 주관기관 선정
  - 서류평가 점수 30%, 발표평가 점수 70%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주관기관 최종 선정

## 5

## 유의사항

-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최종 선정된 주관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사업 세부 관리기준, 협약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신청·접수(방문 또는 우편)는 신청 기간 (~'25.2.28.(금), 17:00) 내 필히 완료되어야 하며, 마감 이후 추가 제출은 불가함
  - \* 제출서류 등에 누락·착오가 있더라도 신청마감일 이후 수정·보완·교체 등 일체 불가
- 주관기관 선정 후 협약일 이전까지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전용공간 구축 및 전담조직 구성과 관련하여, 사업제안서에 “예정(확보·채용 등)”으로 기재한 사항은 협약체결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이행되어야 함
  - \* 기한 내 해당사항 미이행 시, 주관기관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중도 해약할 수 있음
- 사업 운영 기간 도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 부진 등의 사유, 주관기관 신청 자격에 위반되는 사항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협약을 중도 해약할 수 있음
- 사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국고 보조금 환수 및 향후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6

## 기타 안내사항

### □ 공고 안내

- 모집공고·사업신청서 및 제안서 서식 등은 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http://www.khidi.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내

### □ 문의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육성단 산업육성지원팀 송주영 연구원  
(☎ 043-713-8817, [zooy91@khidi.or.kr](mailto:zooy91@khidi.or.kr))

### 별첨 1. 사업신청 서식

# 세부 과업내용

**참고**

**세부 과업내용(제안 필수사항)**

<지원유형별 과업 요약>

\* 지원유형별 필수과업 '√' 표시

구 분	협업 기반 조성형 (유형 ①)	협업 성과 창출형 (유형 ②)
<b>□ 전용공간 및 전담조직 운영</b>		
• 전용공간	√	√
• 전담조직	√	√
<b>□ 임상 전문가 및 창업기업 발굴</b>		
• 임상 전문가	√	√
• 창업기업	√	√
<b>□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b>		
• 임상 컨설팅	√	√
• 연구회	√	√
• 협력과제		√
• 산-병 교류 프로그램	(선택사항)	√
• 자율 프로그램		(선택사항)

**□ 전용공간 및 전담조직 운영** 공통 필수

- (전용공간) 병원 내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전용공간, 장비 및 공동 연구시설 등 운영
- 활용 목적에 따라 ① wet-lab, ② dry-lab, ③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구성

<전용공간 운영 세부사항>

- (위치) 병원 내 공간
    - \* 전용공간을 신규로 구축하는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의료기관 내 공간에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병원이 사용하는 부대시설(병원부지 내)에 구축할 수 있음
  - (규모) 최소 10개 이상 기업이 동시 활용 가능토록 공간 구성 및 확보
  - (형태) 실험(wet-lab) 또는 업무(dry-lab) 등 기관의 운영 전략에 따라 선택적 구성하되, 임상 전문가-창업기업 간 컨설팅, 회의, 세미나 등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 구축, 확보
  - (공용공간) 기타 병원 내 공용 시설의 경우 개방형실험실 지원기업이 상시 활용 가능토록 개방·운영
- ※ 사업비로 병원 등 공간 사용에 따른 임차비는 편성할 수 없음



- (전담조직) 창업기업 발굴·관리, 임상의 매칭, 창업기업-임상의 협력 과제 등 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운영
  - 전담코디네이터를 포함한 3인 이상 인력을 필수로 구성, 운영

**<전담조직 구성 세부사항>**

- (필수조건) 전담코디네이터 2인 및 병원 내 정규 인력(겸직가능) 1인 이상 구성, 운영
  - (전담코디네이터) 기술사업화 전문인력\*으로 사업참여율 100%(타업무 겸직 금지)인 인력
    - \* 전문인력은 변리사, 기술거래사, 경영지도사 등의 공인자격, 기술사업화, 창업지원 관련 민간자격을 가진 자 또는 기술사업화 지원 관련 3년 이상 실무경험 보유자를 말함
  - (정규인력) 병원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인력
    - \* 기관 내 정규인력은 겸직가능하며 단, 본 사업참여율은 30% 이상이어야 함
- (선택요건) 전담코디네이터 외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겸직 인력 운용 가능
  - \* 겸직인력은 사업참여율 30% 이상 인력을 말하며, 고용형태는 무관
- ※ (인건비 편성) 전담코디네이터 및 겸직인력은 사업비 내에서 인건비 편성·집행(참여율 비례) 가능
  - \* 기관 내 정규인력(사업책임자 제외)의 인건비(참여율 비례)에 한하여 민간부담금(현물)으로 인정함

□ **임상 전문가 및 창업기업 발굴** 공통 필수

- (임상 전문가) 소속 병원 내 임상의사, 간호사, 변리사 등 창업기업 대상 컨설팅, 임상 자문 등을 지원하는 전문인력 확보 및 Pool 구축
  - 창업기업 컨설팅, 협력과제 및 연구회 구성 등을 위한 전문가 운영

**<임상 전문가 운영 세부사항>**

- (인력 수) 임상의사-창업기업 간 1:1 이상 배정할 수 있는 규모로 구성하되, 총인원 수는 제한 없음
- (자격요건) 임상의사, 간호사 등 보유 면허 형태의 제한은 없으나, 창업기업 컨설팅·멘토링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분야)을 고려하여 구성
- ※ 전문가 풀에 등록된 전문 인력에 한해 편성된 사업비 내에서 자문수당 지급 가능

- (창업기업) 보건의료 분야 7년 미만 창업기업 발굴·지원
  - 연간 20개 이상 창업기업을 발굴하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은 계속 지원 가능

**<창업기업 발굴·지원 세부사항>**

- (지원기준) 최초 지원기업 선정 시 공고일 기준 7년 미만 기업을 선정(최소 20개사 이상)
- (기타)
  - 교원창업기업, 소속 대학 산학협력단 출자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의 경우 전체 지원기업 수의 25% 내에서 선발, 지원 가능
  - 지원기업은 병원 소재지로 주소 이전 등 조건은 없으나 병원-창업기업 간 지원 협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함

## □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임상 컨설팅) 전문가 Pool에 등록된 전문인력을 창업기업과 1:1 또는 1:多로 배정하여 상시 자문 제공 **공통** **필수**

### <임상 컨설팅 세부사항>

- (임상 컨설팅)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임상 전문가의 컨설팅 및 심층 자문 제공  
※ 전문가 Pool에 등록하고, 사업에 참여하여 창업기업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임상 전문가에 한해 편성된 사업비 내에서 자문수당 지급 가능

- (연구회) 임상 전문가 및 창업기업 등이 참여하는 연관 분야 및 다학제간 연구, 사업화 협력을 위한 모임 운영 **공통** **필수**

### <연구회 세부사항>

- (구성) 병원 내 임상 전문가, 창업기업 및 외부 전문가(자율) 등으로 2개 이상 연구회를 구성·운영
- (주제) 병원의 중점연구분야 또는 창업기업의 사업화 지원 방안 등을 주제로 운영(주제 자율제시)

- (협력과제) 임상 현장의 아이디어 구체화 및 창업기업의 기술·제품 고도화 등을 위한 협력과제 운영 및 지원 **유형 ② 필수** **유형 ① 선택**

- 협력과제는 ‘임상의사와 창업기업’이 팀을 구성·운영하며, 공동연구기획, 창업기업 기술(제품) 실증 등 추진

### <협력과제 세부사항>

- (주제·내용) 임상의사가 보유한 아이디어의 검증, 창업기업 기술(제품)의 임상 설계, 시험분석, 공동 R&D 기획, 시제품 제작 등 자율(주제·내용 제한 없음)
- (과제 수) 당해연도 지원기업 수의 50% 이상 과제를 발굴·선정하여 지원  
\* 예) 20개사를 지원하는 경우, 10개 이상 과제를 발굴·지원하여야 함
- (기타) 협력과제를 통해 수행한 결과로 5건 이상의 연구과제 기획서 제출  
※ 협력과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비 내에서 집행가능(단, 창업기업에 비용을 직접 지급하여 운영은 불가)

- (산-병 교류 프로그램) 병원 외 협력 기관(기업·클러스터 등) 간 교류,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유형 ② 필수** **유형 ① 선택**

- 병원의 창업지원 인프라 홍보, 병원과의 협력 네트워크 수요 발굴, 지원 기업의 판로개척 지원 등을 위한 교류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 <산-병 교류프로그램 세부사항>

- (운영방식) 사업 주관기관(병원)-외부기관(바이오클러스터 등) 간 포럼, 협력 워크숍, 성과교류회 등

- (자율 프로그램) 임상 현장의 미충족 의료수요(unmet needs) 발굴, 창업기업의 기술 고도화 및 아이디어 실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자율 기획, 제시 **유형 ① 선택** **유형 ② 선택**

- \* 세부 주제, 방식, 프로그램 종류 및 수 등 별도 제한 없음